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150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15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24.

(3) 회 부 일 : 2026. 7. 27.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 임원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으로서, 대표자와 종사자는 장애인 근로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며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럼에도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4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 4제2항제24호).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4. -----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 제13조----- -----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이러한 신고의무자 제도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장과 종사자 등 장애인과의 접촉 가능성 또는 보호·지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신고의무자로 추가되는 경우, 사업주는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1)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각 호 생략)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²⁾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호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³⁾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장애인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주와 종사자가 근무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징후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신속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시 보호·지원을 도모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됨.⁴⁾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 30% 이상 등의 고용 기준을 충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요건을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임.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최근 인천 남동구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발생함(더인디고. 2026년 7월 2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예고된 참사’ 현실이 됐다.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9010>).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는 총 875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35,898명의 비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명)

구분	인증 사업장	비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	875	15,944	19,954
자회사형 ¹⁾	194	4,710	8,848
일반 ²⁾	681	11,234	11,106

주1): 자회사형은 모회사가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2): 일반형은 모회사가 없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료: 보건복지부, 2026. 3. 기준

□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될 경우, 사업주는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소속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및 과태료 등 제재 내용을 충분히 안내·홍보하여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기간을 부여하고, 교육자료의 마련과 교육 실시·결과 제출 절차의 정비 등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추가한 최근 입법례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한 바 있음.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부칙 <법률 제21114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266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부칙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50호,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의결되었으나 (2024. 11. 2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라, 최종 대안에서 제외되었음(2025. 9. 10.).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사업장의 대표자와 종사자로 하여금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히 신고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나.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장애인표준사업장 대상 신고의무 부과 외에 신고절차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